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아동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(안 제2조)
- 나.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전체)
- 다.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(안 제3조의2)
- 라.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 (현행 제10조)
- 마. 그 밖에 법제처의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아동복지법」,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입법예고 : 2022. 9. 13. ~ 2022. 10. 3. (20일간)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"위원회""를 "심의위원회""로, "10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회의 위원장"을 "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,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사례결정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"위원장"을 "심의위원장"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이"를 "심의위원회의 위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

제6조제1항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에게"를 "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"로, "위원회에"를 "심의위원회에"로, "위원회는"을 "심의위원회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위원"을 "심의위원회의 위원"으로 한다

제7조제1항 중 "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"를 "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장이사고"를 "심의위원장이 사고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위원장 및"을 "심의위원장 및"으로, "위원장이"를 "심의위원장이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"을 "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9조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하고,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위원장"을 "심의위원장"으로,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12조)제1항 및 제2항 중 "위원회"를 각각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3조) 중 "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4조) 중 "위원회의 운영"을 "심의위원회의 운영"으로, "위원회의 의결"을 "심의위원회의 의결"로, "위원장"을 "심의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아 혂 했 제2조(구성) ①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제2조(구성) ① ------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 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----- <u>"심의위원회"</u>-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----- 15명 -----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심 의위원장"이라 한다)-----서대문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과 다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.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.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으로 하고,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람이 된다. <u>를 넘지 않도록</u>하여야 한다. 1.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 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 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. 변호사.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 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 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 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 던 사람 4.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

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공 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 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 고,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 제3조(기능) 심의위원회-----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<신 설>

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 임기간으로 한다.

<삭 제>

제3조의2(사례결정위원회) ① 구청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 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 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

-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2에 따른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공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심의위원장 -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<u>위원이</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• 5. (생략)

- 제6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<u>위원회</u>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 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이해당사자는 <u>위원</u>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<u>위원회에</u>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<u>위원회는</u>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③ <u>위원</u>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<u>위원장은</u> <u>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</u> 업무를 총괄한다.

2	(현	행과	같음)

제5조(위원의 해촉) <u>심의위</u>					
원회의 위원이			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
4.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					
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					
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					
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					
한 경우					
<u>5.·6</u> 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					
제6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<u>심의위원</u>					
<u> </u>					
② 심의위원회의 위					
<u>원에게</u>					
<u>심의위원회에</u>					
<u>심의위원회는</u>					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					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<u>심의위</u>					
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					

심의위원회 -----

② <u>위원장이 사고</u>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<u>위원장 및</u>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위원장</u>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심의위원장이 사고 ③ 심의위원장 및
제8조(회의) ①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</u> <u>장</u>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② <u>위원회</u>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(생 략)	제8조(회의) ① <u>심의위원회의 회의</u> 는 <u>심의위원장</u> ② <u>심의위원회</u> (3)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의견청취) <u>위원회</u> 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, 전문가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	제9조(의견청취) <u>심의위원회</u>
제10조(우선조치)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 안건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 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 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.	<u><삭 제></u>
<u>제11조(</u> 간사 등) ① <u>위원회</u>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각 1명씩 둔다. ② (생 략)	제10조(간사 등) ① 심의위원회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③ ----- 심의위원장----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--- 심의위원회------④ (생 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12조(회의의 비공개) ① 위원회는 제11조(회의의 비공개) ① 심의위원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② 심의위원회-----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되다.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소 제12조(수당 등) 심의위원회-----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**제13조**(운영세칙) ------
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---- 심의위원회의 의결--- 심

---- 심의위원회의 운영-----

의위원장----.

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
장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- 비용발생 요인
 비용발생 요인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제2호

-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- 3. 미첨부 사유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를 규정하여 세입·세출 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7급 이은주(02-330-4913)

관계법령

□ 아동복지법

[시행 2022. 7. 1] [법률 제17784호, 2020.12.29., 일부개정]

- 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고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 <개정 2020. 12. 29., 2021. 12. 21.>
 - 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- 3.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 - 4.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
 - 5.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 - 6.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 - 7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9. 19.>

- 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 -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 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3. 22.>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·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 3. 22., 2020. 12. 29.>
 - ④ 삭제 <2021. 12. 21.>
 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 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 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9.>

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2. 7. 1.] [대통령령 제331843호, 2021. 6. 29., 일부개정]

- 제13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8. 3. 6., 2020. 9. 29., 2021. 6. 29.>
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8. 3. 6.>
 -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8. 3. 6.>
 -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 (이하 "시・도"라 한다) 및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(시・도는 4급 이상 공무원, 시・군・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)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4. 6. 11., 2018. 3. 6., 2020. 9. 29., 2021. 6. 29.>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 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 - 나. 시·도 교육청(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)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 - 2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
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4.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- 5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「지방공 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아동복지학,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7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8. 3. 6.>
-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3. 6.>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6., 2020. 9. 29.>
- 제13조의2(사례결정위원회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(이하 "사례결정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시・도 사례결정위원회: 시・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 - 2. 시・군・구 사례결정위원회: 시・군・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 -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한다.
 -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1. 6. 29.]

- 제13조의4(보호조치 결정 절차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6. 29.]
- 제21조의4(퇴소조치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 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 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<u>보호</u> 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, 아동복지시설의 장,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(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 <개정 2021. 6. 29.>

[본조신설 2016. 9. 22.] [제21조의2에서 이동 <2021. 6. 29.>]

- 제21조의5(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<u>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</u>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"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(이하 "아동보호전문기 관"이라 한다)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·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.
 - 1.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
 - 2.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
 - 3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
 - 4.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·교육 및 심리치료

[본조신설 2021. 6. 29.]